의안번호	제563호
의결연월일	2020. 10. . (제99회)

의결사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최영희 · 김상현 · 전홍표 · 노창섭 · 백태현 · 김경희 김우겸 · 김상찬 · 공창섭 · 박현재 · 구점득 · 조영명 김인길 · 주철우 · 정길상 · 이천수 · 이해련 · 심영석 최희정 · 진상락 · 이종화 · 박춘덕 · 정순욱 의원
발의연월일	2020. 10. 15.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3

발의연월일 : 2020. 10. 15.

발 의 자 : 최영희·김상현·전홍표·노창섭·백태현·김경희 김우겸·김상찬·공창섭·박현재·구점득·조영명 김인길·주철우·정길상·이천수·이해련·심영석 최희정·진상락·이종화·박춘덕·정순욱 의원 (23명)

1. 제안이유

제10조의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을 유지하되, 봉투 판매가격 변동 없이 판매소 이윤 현실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량제봉투 판매소 판매이윤을 6% → 9% 인상(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종량제봉투의 규격·용도 및 공급·판매가격(제14조 관련)

(단위:원)

규격	용 도	봉투공급가격	판매수수료	봉투판매가격
5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154	16	170
10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재사용종량제봉투포함)	318	32	350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391	39	430
20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재사용종량제봉투 포함)	637	63	700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873	87	960
50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1,628	162	1,790
	소각용쓰레기수거용 * 공공용	-	-	-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2,211	219	2,430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 공공용	-	-	-
75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2,447	243	2,690
	소각용쓰레기수거용 * 공공용	-	-	-
100ℓ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공공용	-	-	-

참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종량제봉투의 규격·용도 및 공급·판매가격

(제14조 관련)

(단위: 원)

규격	용 도	봉투 공급 가격	판매 수수료	봉투 판매 가격
5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159	11	170
10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재사용종량제봉투포함)	329	21	350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404	26	430
20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재사용종량제봉투 포함)	658	42	700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902	58	960
50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1,682	108	1,790
	소각용쓰레기수거용 * 공공용	-	-	-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2,284	146	2,430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 공공용	-	-	-
75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2,528	162	2,690
	소각용쓰레기수거용 * 공공용	-	-	-
100ℓ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공공용	-	-	-

개 정 안

[별표 1]

종량제봉투의 규격·용도 및 공급·판매가격

(제14조 관련)

(단위: 원)

규격	용 도	봉투 공급 가격	판매 수수료	봉투 판매 가격
5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154	16	170
10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재사용종량제봉투포함)	318	32	350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391	39	430
20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재사용종량제봉투 포함)	637	63	700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873	87	960
50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1,628	162	1,790
	소각용쓰레기수거용 * 공공용	-	-	-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2,211	219	2,430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 공공용	-	-	-
75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2,447	243	2,690
	소각용쓰레기수거용 * 공공용	-	-	-
100ℓ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공공용	-	-	-

참고 **관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참고 **현행 조례**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품”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시장이 정하는 품목 및 대상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6. “공공쓰레기”란 거리, 하천 등 공공장소의 청소과정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 등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20. 7. 13.>

제4조(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 내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 내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 · 건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토지 · 건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각종 집회, 행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행사 등의 추진주체가 수거하고 행사장소의 청결을 유지 하여야한다.

제2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 · 운반 · 처리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 등의 민간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분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력 · 장비 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또는 처분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또는 처분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 ·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 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대행업체가 대행료를 허위 ·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사유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 · 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 악취발생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항상 청결히 유지 · 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품 등으로 분리 · 보관 · 배출하여야 하며 해당 폐기물 별로 다음 각 호의 배출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의 묶는 부분으로 표시된 선 이하로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단독주택과 사업장은 문 앞, 공동주택은 지정장소에 배출시간을 지켜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도한 압축 등을 통해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제한한다. <개정 2020. 7. 31.>
2. 가정,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전통시장,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고 화훼농가 등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되는 연탄재는 종량제마대에 담아 지정된 수거일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품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배출현장에서 폐콘크리트 · 폐아스콘 · 폐목재 등으로 분류하여 폐기물의 성상별로 해당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 발생 등의 사유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경우 법과 조례에 따라 수집 · 운반 · 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시장이 지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6.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등 포함)로 배출하여야 한다.
7.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법과 조례에 따라 수집 · 운반 · 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 배출 및 수거일과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제7조의 내용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배출자 소재파악이 어려운 폐기물의 경우 배출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지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지대 단독주택, 농어촌 지역 등 청소 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지역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일정 장소와 지정 수거일을 정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약 체결 당사자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 등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 · 유지하며, 시와의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 제공 등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공동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집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불법투기, 소각, 재활용품 분리 및 배출방법 위반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단속활동을 위하여 감시원을 둘 수 있으며, 감시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장 폐기물 수수료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제9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법 제14조에 따라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며 종류 및 규격, 색상, 사양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변조 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종량제봉투 제작 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를 광고주의 신청을 받아 게재할 수 있으며, 상업광고 신청서 및 광고료 등 구체적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하며,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는 종량제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대행계약자를 정하여 제작·공급·판매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구청장, 읍·면·동장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공급할 수 있으며, 공공용봉투는 공공쓰레기 수거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④ 판매소의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관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의 판매행위를 하지 않은 때
2. 시장이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때
3. 시장이 정한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때

4. 불법제작 유통된 종량제봉투를 진열 및 판매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1년(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 3년)이 경과 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제13조(종량제봉투 제작, 공급, 판매업소 확인)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 공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제작업자, 공급대행자의 그 업무에 관한 사항과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관할 읍·면·동장은 종량제봉투의 판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자의 그 업무에 관한 사항과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며 별표 1과 같다.
2.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거 수수료는 별표 2와 같고 배출자의 신고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대행업체 대표가 직접 부과·징수하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처리 절차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확보를 위하여 재활용 센터 등이 재활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등을 수거할 경우 무상 수거 또는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및 운영비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반입수수료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제14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3. 적정 판매 이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 결정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16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통·리·반장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개정 2020. 7. 31.>

종량제봉투의 규격·용도 및 공급·판매가격(제14조 관련)

(단위:원)

규격	용 도	봉투공급가격	판매수수료	봉투판매가격
5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159	11	170
10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재사용종량제봉투포함)	329	21	350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404	26	430
20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재사용종량제봉투 포함)	658	42	700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902	58	960
50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1,682	108	1,790
	소각용쓰레기수거용 * 공공용	-	-	-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2,284	146	2,430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 공공용	-	-	-
75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2,528	162	2,690
	소각용쓰레기수거용 * 공공용	-	-	-
100ℓ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공공용	-	-	-

창 원 시

수신 창원시의회의장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 개정 관련 검토의견서 송부(최영희 의원)**

1. 의회사무국-7457(2020. 8. 24.)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조례 개정 개요

조 례 안	부 서 검 토 의 견	발의자
창 원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계법령 저촉여부 : 저촉사항없음 ❍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및 판매소 이윤 현실화를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최 영 희 의 원
창 원 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계법령 저촉여부 : 저촉사항없음 ❍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이윤을 인상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1. 조례안 부서검토의견 1부.
2. 창원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안) 1부.
3.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안) 1부.
4.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서수정안) 1부.
5. 비용추계서 2부. 끝.

창 원 시 장

주무관 **강혜영** 의회협력담당 **김정미** 기획관 **김종필** 전결 2020. 9. 24.

협조자

시행 기획관-12968 (2020. 9. 24.) 접수 의회사무국-8663 (2020. 9. 25.)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기획관 (용호동) / http://www.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2264 팩스번호 055-225-4702 / aeiou1005@korea.kr / 비공개(5)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보고

☐ 조례안 개요

○ 조례안명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영희 의원**

○ 제안이유 : 종량제봉투(납부필증) 판매소 이윤 현실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 **(안 별표 1)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이윤 인상(6%→9%)**
- **(안 부칙)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 현 실 태

○ **종량제봉투(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판매 절차**

시 (봉투 제작)	제작·납품 ⇄ 판매수입금 입금 (익일 3일까지)	시설공단 (판매대행)	공 급 ⇄ 판매이윤(6%) 제외, 현금 납부	판매소 (2,677개소)	판 매 ⇄ 현금 또는 카드	소비자

○ 판매소의 **판매이윤 6%**로, 소비자 카드결제시 **카드수수료(2~3%)는 판매소에서 부담** ⇒ **영세 판매소의 카드결제 거부** 민원 발생

○ 제2020-3호 규제개혁심의회('20.8.13.) 「**판매소 봉투대금 결제방법(현금만 가능)**」 규제 존치여부 심의

- 현금결제만 가능한 판매소 공급대금을 카드결제도 가능하도록 개선안 심의
- 판매소의 카드결제 수용 시 카드수수료(년 **5.9억~8.9억**, '19 판매 296억 대비) 만큼 재정 손실 발생 ⇒ **카드사만 이익 증대**
- 심의결과 : **존치결정**(단, 카드결제가 대세적이고 편의성도 있으나, 카드 수수료 부담이 따르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 방안 마련할 것을 요구)

☐ 종합의견 : 판매이윤 인상(6%→9%) 조례안 수용

○ 판매소의 판매이윤 3% 인상(단, 판매소의 공급대금 현금 납부 유지)으로 **카드결제 거부 민원 및 카드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해소**

○ 카드사 수익예상분을 지역에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기대

의원발의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조례안 개요

○ 발 의 자 :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영희 의원**

○ 조례안명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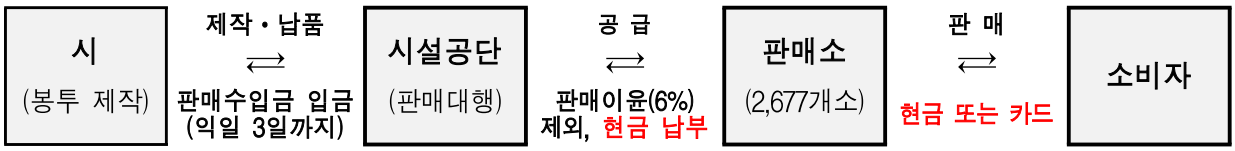
○ 제안이유 : 종량제봉투(납부필증) 판매소 이윤 현실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주요내용

- **(안 별표1)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이윤 인상(6%→9%)**
- **(안 부칙)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Ⅱ 현 실태

○ **종량제봉투(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판매 절차**



○ 판매소의 **판매이윤 6%**로, 소비자 카드결제시 **카드수수료(2~3%)는 판매소에서 부담** ⇒ **영세 판매소의 카드결제 거부** 민원 발생

○ 제2020-3호 규제개혁심의회('20.8.13.) 「**판매소 봉투대금 결제방법(현금만 가능)**」 **규제 존치여부 심의**

- 현금결제만 가능한 판매소 공급대금을 카드결제도 가능하도록 개선안 심의

- 판매소의 카드결제 수용 시 카드수수료(년 **5.9억~8.9억**, '19 판매 296억 대비) 만큼 재정 손실 발생 ⇒ **카드사만 이익 증대**
- **심의결과 : 존치결정**(단, 카드결제가 대세적이고 편의성도 있으나, 카드 수수료 부담이 따르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 방안 마련할 것을 요구)

Ⅲ 담당부서 검토내용

창원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관계법령 저촉 여부 : 저촉 사항 없음

2 부서 검토 의견

○ **조례안 별표 1(안) 개정 : 찬성**

-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결재 수수료 부담완화 및 판매소 이윤 현실화를 위해 이번 조례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종합의견 : **조례안 수용**

○ **상위법 저촉여부 : 해당 없음**

○ **재정부담 사항** : 붙임 비용추계 자료 참조

○ 별표 1(안) : 종량제봉투 **판매이윤 인상(6%→9%)**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관계법령 저촉 여부 : 저촉 사항 없음

2 부서 검토 의견

○ **조례안 별표 1(안) 개정 : 찬성**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이윤를 인상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개정안 수용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조치에 따른 기존 조항 개정(안 제9조제1항) : 추가**

현 행	개정안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3 종합의견 : **조례안 수용 및 추가**

○ **상위법 저촉여부 : 해당 없음**

○ **재정부담 사항** : 붙임 비용추계 자료 참조

○ 별표 1(안)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이윤 인상(6%→9%)**

○ 조례안 제9조 제1항(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 **추가**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조치에 따른 **기존 조항 개정**

붙임 1.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각 1부

2. 비용추계서 각 1부

3. 조례수정(안) 1부. 끝.

붙 임 **검토의견 송부안(부서 수정안)**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0. . .
발 의 자 : 최영희 의원

1. 제안이유

제10조의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을 유지하되, 봉투 판매가격 변동 없이 판매소 이윤 현실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량제봉투 판매소 판매이윤을 6% → 9% 인상(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련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종량제봉투의 규격·용도 및 공급·판매가격(제14조 관련)

(단위:원)

규격	용 도	봉투공급가격	판매수수료	봉투판매가격
5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154	16	170
10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재사용종량제봉투포함)	318	32	350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391	39	430
20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재사용종량제봉투 포함)	637	63	700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873	87	960
50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1,628	162	1,790
	소각용쓰레기수거용 * 공공용	-	-	-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2,211	219	2,430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 공공용	-	-	-
75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2,447	243	2,690
	소각용쓰레기수거용 * 공공용	-	-	-
100ℓ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공공용	-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종량제봉투의 규격·용도 및 공급·판매가격

(제14조 관련)

(단위: 원)

규격	용 도	봉투 공급 가격	판매 수수료	봉투 판매 가격
5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159	11	170
10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재사용종량제봉투포함)	329	21	350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404	26	430
20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재사용종량제봉투 포함)	658	42	700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902	58	960
50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1,682	108	1,790
	소각용쓰레기수거용 * 공공용	-	-	-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2,284	146	2,430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 공공용	-	-	-
75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2,528	162	2,690
	소각용쓰레기수거용 * 공공용	-	-	-
100ℓ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공공용	-	-	-

개 정 안

[별표 1]

종량제봉투의 규격·용도 및 공급·판매가격

(제14조 관련)

(단위: 원)

규격	용 도	봉투 공급 가격	판매 수수료	봉투 판매 가격
5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154	16	170
10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재사용종량제봉투포함)	318	32	350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391	39	430
20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재사용종량제봉투 포함)	637	63	700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873	87	960
50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1,628	162	1,790
	소각용쓰레기수거용 * 공공용	-	-	-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2,211	219	2,430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 공공용	-	-	-
75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2,447	243	2,690
	소각용쓰레기수거용 * 공공용	-	-	-
100ℓ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공공용	-	-	-

[별지 제2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인상(6%→9%)에 따른 세입감소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별표1]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종량제봉투 판매금액 매년 3% 증가 예상

○ 판매수수료 6% 적용시와 9% 적용시 시세입 감소액 추계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량제봉투 판매금액	세입금액		세외수입 감소액
		판매수수료 6% 적용 시	판매수수료 9% 적용 시	
2021년	23,946	22,509	21,791	718
2022년	24,665	23,185	22,445	740
2023년	25,405	23,880	23,118	762
2024년	26,167	24,597	23,812	785
2025년	26,952	25,335	24,526	809

다. 재원조달방안

○ 세외수입(종량제봉투 판매 세입)

3. 작성자 : 환경도시국 자원순환과장 김 동 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718,386	739,937	762,136	785,000	808,550	3,814,009
종량제봉투 판매		718,386	739,937	762,136	785,000	808,550	3,814,009
세 출							
재원 조달		718,386	739,937	762,136	785,000	808,550	3,814,009
의존 재원	소 계	718,386	739,937	762,136	785,000	808,550	3,814,009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종량제봉투 판매)	718,386	739,937	762,136	785,000	808,550	3,814,009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열린 의회"

창 원 시 의 회

수신 창원시장(기획관)

(경유)

제목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검토의견 조회 송부(최영희의원)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의거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0. 9. 8.(화)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협의사항 :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저촉 여부, 재정 부담 등

❍ 조례안 개요

조 례 안	발 의 자	상 정 시 기
- 창원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희 의원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붙임 창원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각 1부. 끝.

창원시의회의장

주무관 정지윤 입법지원담당 이행정 의회담당관 최진호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2020. 8. 24.

협조자

시행 의회사무국-7457 (2020. 8. 24.) 접수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용호동) / http://council.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5374 팩스번호 055-225-4743 / jsisisi@korea.kr / 비공개(5)

붙임 **검토의견 조회안**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0. . .
발 의 자 : 최영희 의원

1. 제안이유

제10조의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을 유지하되, 봉투 판매가격 변동 없이 판매소 이윤 현실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량제봉투 판매소 판매이윤을 6% → 9% 인상(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련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종량제봉투의 규격·용도 및 공급·판매가격(제14조 관련)

(단위:원)

규격	용 도	봉투공급가격	판매수수료	봉투판매가격
5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154	16	170
10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재사용종량제봉투포함)	318	32	350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391	39	430
20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재사용종량제봉투 포함)	637	63	700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873	87	960
50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1,628	162	1,790
	소각용쓰레기수거용 * 공공용	-	-	-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2,211	219	2,430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 공공용	-	-	-
75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2,447	243	2,690
	소각용쓰레기수거용 * 공공용	-	-	-
100ℓ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공공용	-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종량제봉투의 규격·용도 및 공급·판매가격

(제14조 관련)

(단위: 원)

규격	용 도	봉투 공급 가격	판매 수수료	봉투 판매 가격
5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159	11	170
10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재사용종량제봉투포함)	329	21	350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404	26	430
20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재사용종량제봉투 포함)	658	42	700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902	58	960
50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1,682	108	1,790
	소각용쓰레기수거용 * 공공용	-	-	-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2,284	146	2,430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 공공용	-	-	-
75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2,528	162	2,690
	소각용쓰레기수거용 * 공공용	-	-	-
100ℓ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공공용	-	-	-

개 정 안

[별표 1]

종량제봉투의 규격·용도 및 공급·판매가격

(제14조 관련)

(단위: 원)

규격	용 도	봉투 공급 가격	판매 수수료	봉투 판매 가격
5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154	16	170
10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재사용종량제봉투포함)	318	32	350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391	39	430
20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재사용종량제봉투 포함)	637	63	700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873	87	960
50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1,628	162	1,790
	소각용쓰레기수거용 * 공공용	-	-	-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2,211	219	2,430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 공공용	-	-	-
75ℓ	소각용쓰레기수거용	2,447	243	2,690
	소각용쓰레기수거용 * 공공용	-	-	-
100ℓ	매립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마대)* 공공용	-	-	-